

|        |             |
|--------|-------------|
| 의안번호   | 2216495     |
| 의 퇴 인  | 이성윤의원       |
| 회 답 일  | 2025.10.23. |
| 추 계 번호 | 25D4634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br>(현행) 100분의 6, 10년간→(개정안) 100분의 10, 15년간 | 의무규정 |
| 2  | 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 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설치 직전 연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칙 제3조의 단서 규정(2015년 1월 1일 이전 통합 지방자치단체 한정 지원)을 삭제하여 향후 신규로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지원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을 받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sup>1)</sup> (2011년~2025년)와 충청북도 청주시<sup>2)</sup> (2015년~2029년)로 통합 이후 10년간 통합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지원하였고, 부칙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후 5년간 각 연도마다 100분 6, 100분의 5, 100분의 4, 100분의 2, 100분의 1을 차등 지원

[표 1]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단위: 백만원)

|     |                                                  |        |        |        |        |       |       |
|-----|--------------------------------------------------|--------|--------|--------|--------|-------|-------|
| 창원시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지원액                                              | 14,664 | 14,664 | 12,220 | 9,776  | 4,888 | 2,444 |
|     | 지원 기준 <sup>3)</sup><br>(통합 직전<br>보통교부세<br>총액 기준) | 6%     | 6%     | 5%     | 4%     | 2%    | 1%    |
| 청주시 |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지원액                                              | 18,706 | 18,706 | 15,589 | 12,471 | 6,236 | 3,118 |
|     | 지원 기준<br>(통합 직전<br>보통교부세<br>총액 기준)               | 6%     | 6%     | 5%     | 4%     | 2%    | 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향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될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예상됨
- 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구성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1) 2010년 7월 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하여 출범

2) 2014년 7월 1일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하여 출범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50%를 교부하고, 국고에서 50%를 보조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임홍연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홍연 | 02-6788-4673 | limhy@nabo.go.kr |